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25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한민수・박상혁・임오경

이건대 · 김영호 · 박용갑

한준호 · 서영교 · 백혜련

정일영 · 박해철 · 송옥주

홍기워 · 이연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서비스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서비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 조제1항·제2항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 2"를 "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12호"로 한다.

12.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가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를 설계, 수정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제99조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제12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제50조(금지행위) ① -----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부가 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상거래를 말한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인 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 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그 행위를 받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 저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

12 22 1/2 2 1/7 1 0
또는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지
하기 어려운 기만적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제5호, 제5호의2 및 제12호
③ (현행과 같음)
세99조(벌칙)
<u>제</u> 5호의2·제12
<u>\$\overline{\ove</u>

체를 말한다)를 설계 수정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